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4525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나452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가단1157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12. 13.

판결 선고 2018. 1.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가단11579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 대 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ㄴ) 부분 2.4㎡ 지상 목조와가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2.4㎡를 인도하며, 2017. 3. 1.부터 위 선내(ㄴ) 부분 2.4㎡ 지상 목조와가 단층주택의 철거 및 위 선내 (ㄴ) 부분 2.4㎡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 이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제4면 제20행 이하)

피고는 1983. 11. 8.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었으므로 피고와 피고의 전 점유자들이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6. 2. 2. 이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승계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7. 1.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근수

판사장지용

판사강건

별지